

바. 복직절차

- 1)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육아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(유산, 양육대상자녀의 사망, 출산 등) 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 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(다만, 출산으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)
 - ※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,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
 - ※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6조에 정하는 사항 외의 소급 임용이 불가하므로 적기 처리에 특히 유의
- 2) 임용권자는 2년 이상 육아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
- 3) 휴직자가 휴직 사유 소멸 또는 휴직 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 기간으로 봄
- 4)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 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(「교육공무원 인사 관리규정」 제25조)

사. 육아휴직수당(2025.1.3. 시행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1조의 3)

- 1)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. 이 경우 육아휴직 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,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.
 - 가)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: 250만원
 - 나)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: 200만원
 - 다)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: 160만원
- 2) 1)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
 - 가)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
 - (1)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함
 - (2)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(5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)까지: 제1항에 따른 금액
 - (3)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,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